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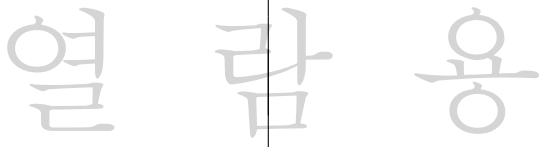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60-1996-533576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4년10월28일	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	철근콘크리트조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(8) 1층 114.78㎡ 2층 115.74㎡ 3층 115.74㎡ 4층 104.37㎡ 옥탑층 12.72㎡ 지층 112.98㎡	도면편철장 제5책제77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3월 26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아길 57-14	철근콘크리트조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(8) 1층 114.78㎡ 2층 115.74㎡ 3층 115.74㎡ 4층 104.37㎡ 옥탑층 12.72㎡ 지층 112.98㎡	도로명주소 병기 2019년3월19일 등기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	대	203.6㎡	1994년10월28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3월 26일 전산이기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4년10월28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및 벽돌조 93.57㎡	도면편철장 제5책제77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3월 26일 전산이기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203.6분의 41.424	1994년10월7일 대지권 1994년10월28일	
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3월 26일 전산이기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5)	소유권이전	1998년6월5일 제33340호	1998년6월5일 증여	소유자 장인순 511227-***** 서울 도봉구 창동 609-153 현대아트빌라 401호
1-1 (전 5-1)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1999년6월10일 제50204호	1999년6월2일 호적정정	장인순의 성명(명칭) 장희재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-1번 등기를 2001년 03월 26일 전산이기
1-2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장희재의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아길 57-14, 401호(창동, 현대아트빌라) 2013년11월13일 부기
2	소유권이전	2022년4월28일 제62185호	2021년9월11일 상속	공유자 지분 7분의 3 최동국 480210-*****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제4층 제4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아길 57-14, 401호(창동, 현대아트빌라) 지분 7분의 2 최정인 751117-*****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49, (녹양동) 지분 7분의 2 최태인 790524-*****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, 105동1508호(창동, 대우아파트)
3	2번최동국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2년6월29일 제95530호	2022년6월29일 서울북부지방법 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2타경247 6)	채권자 주식회사우리카드 110111-51018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(중학동, 더케이아트인타워) (채권관리부)
4	2번최동국지분가압 류	2022년9월8일 제131146호	2022년9월8일 서울북부지방법 원의 가압류 결정(2022카단2 2371)	청구금액 금60,954,879 원 채권자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0114-02660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(당산동1가, 엠지신용정보빌딩)
5	2번최정인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3년10월23일 제155657호	2023년10월23일 서울북부지방법 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3타경446 2)	채권자 삼성카드주식회사 110111-03469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(태평로2가) (강남송무)
6	2번최동국지분전부 이전	2023년10월26일 제157299호	2023년10월16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공유자 지분 7분의 3 정용훈 840824-*****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4,5층535호(지행동, 시티타워)
7	3번강제경매개시결 정, 4번가압류등기말소	2023년10월26일 제157299호	2023년10월16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6월19일 제98898호	2024년6월19일 서울북부지방법 원의	채권자 정용훈 840824-*****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4, 535호(지행동, 시티타워)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제4층 제4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강제경매개시결정(2024타경110593)	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01년9월27일 제83992호	2001년9월27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60,000,000원 채무자 장희재 서울 도봉구 창동 609-153 현대아트빌라 401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001565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쌍문동지점)
1-1	1번근저당권이전	2015년1월19일 제3994호	2001년11월1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 (쌍문역지점)
1-2	1번근저당권변경	2023년10월26일 제157299호	2023년10월16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	목적 갑구2번최정인지분전부및 최대인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포기한지분 7분의3(최동국지분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05월09일 08시48분05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60-1996-533576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-153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정용훈 (공유자)	840824-*****	7분의 3	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4,5층535호(지행동, 시티타워)	6
최정인 (공유자)	751117-*****	7분의 2	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49, (녹양동)	2
최태인 (공유자)	790524-*****	7분의 2	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, 105동1508호(창동, 대우아파트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강제경매개시결정	2023년10월23일 제155657호	채권자 삼성카드주식회사	최정인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6월19일 제98898호	채권자 정용훈	정용훈 등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근저당권설정	2001년9월27일 제83992호	채권최고액 금6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	확인불가
1-1	근저당권이전	2015년1월19일 제3994호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	확인불가
1-2	근저당권변경	2023년10월26일 제157299호	목적 갑구2번최정인지분전부및 최태인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	확인불가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력일시 : 2025년 5월 9일 오전 8시48분5초